

# 『Global On-Line서비스』 이용약관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20년 5월 21일

2. 개정내용 : 면책조항 문구 수정 , 용어변경, 문구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1 조(목적)</p> <p>이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과 은행이 제공하는 『Global On-Line』 (이하 “서비스”라 함)를 이용하고자 하는 <u>고객</u>(이하 “고객”이라 함)간에 서비스 이용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 <p>제 2 조 (이용대상)</p> <p>이 서비스의 이용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해외여행자, 해외유학생, 해외거주가 예정된 해외근무발령자 중 <u>서비스를 신청한자에 한합니다.</u></p> <p>제 3 조 (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방법)</p> <p>① 서비스의 내용</p> <p><u>이 서비스는 당행 국내영업점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지정된 당행의 해외영업점에서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서비스입니다.</u></p> <p>② 계좌의 등록</p> <p>가. <u>입금계좌의 등록 : 입금계좌란 당행 해외영업점에서 입금할 수 있는 국내 영업점에 개설된 계좌를 의미하며, 입금계좌 등록시 특정계좌로 입금을 지정하시거나, 또는 입금계좌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나. <u>출금계좌 : 당행 해외영업점에서 출금할 수 있는 국내 영업점에 개설된 계좌를 의미하며, 본인 명의 원화 보통/저축예금 및 외화보통예금만 가능합니다.</u></p> <p>③ <u>이체용도 및 한도</u></p> <p><u>제2조의 고객이 본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이체용도 및 한도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 4 조 (서비스 제한)</p> <p><u>은행은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① 출금할 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자금이체 요청액과 이체관련 수수료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부족할 때</p> <p>② 입금 또는 출금할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되었을 때</p> <p>③ 입출금 할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이 서비스 당일일 때</p> <p>④ <u>입지급 현지국의 법적 지급제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</u></p>	<p>제 1 조(목적)</p> <p>이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과 은행이 제공하는 『Global On-Line서비스』 (이하 “서비스”라 함)를 이용하고자 하는 <u>손님</u>(이하 “손님”이라 함)간에 서비스 이용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</p> <p>제 2 조 (이용대상)</p> <p>이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해외여행자, 해외유학생, 해외거주가 예정된 해외근무발령자 중 <u>은행에 이 서비스를 신청한 자에 한합니다.</u></p> <p>제 3 조 (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방법)</p> <p>① 서비스의 내용</p> <p><u>이 서비스는 은행의 국내영업점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손님이 지정된 은행의 해외영업점에서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서비스입니다.</u></p> <p>② 계좌의 등록</p> <p>가. <u>입금계좌의 등록 : 입금계좌란 은행 해외영업점에서 입금할 수 있는 은행의 국내 영업점에 개설된 계좌를 의미하며, 손님은 입금계좌 등록시 특정계좌로 입금을 지정하거나, 또는 입금계좌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나. <u>출금계좌 : 은행 해외영업점에서 출금할 수 있는 은행의 국내 영업점에 개설된 계좌를 의미하며, 손님 본인 명의의 원화 보통/저축예금 및 외화보통예금만 가능합니다.</u></p> <p>③ <u>이체용도 및 이체한도</u></p> <p><u>제2조의 이용대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체용도 및 이체한도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 4 조 (서비스 제한)</p> <p><u>은행은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① 출금할 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자금이체 요청액과 이체관련 수수료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부족할 때</p> <p>② 입금 또는 출금할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되었을 때</p> <p>③ <u>입출금 할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이 서비스 신청 당일일 때</u></p> <p>④ <u>입지급대상 현지국의 법적 지급제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</u></p>	<p>문구 추가 용어 변경</p> <p>문구 추가</p> <p>용어 변경</p> <p>용어 변경 문구 추가</p> <p>용어 변경 문구 추가</p>

<p>제 5 조 (적용환율) 서비스 이용시 적용되는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① <u>당행</u> 해외영업점에서 국내계좌 출금시: 출금시점에 <u>당행</u> 국내영업점에서 고시된 ‘대고객 전신환매도율 (T/T Selling)’</p> <p>② <u>당행</u> 해외영업점에서 국내계좌 입금시: 입금시점의 <u>당행</u> 국내영업점에서 고시된 ‘대고객 전신환매입율 (T/T Buying)’</p> <p>제 6 조 (이용수수료) 이용수수료는 은행에서 <u>따로</u>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며 변경내용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그 내용을 <u>통지</u> 합니다.</p> <p>제 7 조 면책사항 <u>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u> ① <u>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</u> ② <u>통신장애, 전산장애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</u></p> <p>제 8 조 (서비스 이용의 변경·해지) ① <u>고객이</u>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<u>당행</u> 국내영업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·해지처리를 <u>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·해지</u> 됩니다. ② 은행은 <u>이용자가</u>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<u>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9 조 (생략)</p> <p>제 10 조 (소송의 관할) <u>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은행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</u></p>	<p>제 5 조 (적용환율) 이 서비스의 이용시 적용되는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① <u>은행</u> 해외영업점에서 국내계좌 출금시: 출금시점에 <u>은행</u> 국내영업점에서 고시된 ‘대고객 전신환매도율 (T/T Selling)’</p> <p>② <u>은행</u> 해외영업점에서 국내계좌 입금시: 입금시점의 <u>은행</u> 국내영업점에서 고시된 ‘대고객 전신환매입율 (T/T Buying)’</p> <p>제 6 조 (이용수수료) 이용수수료는 은행에서 <u>별도</u>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며 변경내용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손님에게 그 내용을 <u>통지하기로</u> 합니다.</p> <p>제 7 조 (책임) ① <u>은행은 손님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손님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u> ② <u>은행은 정전, 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제 8 조 (서비스 이용의 변경·해지) ① <u>손님이</u>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<u>은행</u> 국내영업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·해지처리를 <u>완료함으로써 이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·해지</u> 됩니다. ② <u>은행은 손님이</u>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<u>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님에게 서면통지하여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9 조 (현행과 동일)</p> <p>제 10 조 (소송의 관할) <u>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손님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.</u></p>	<p>용어 변경</p> <p>용어 변경</p> <p>용어 변경 문구변경</p> <p>용어 변경 문구 변경</p> <p>문구변경</p>
--	---	--

제 11 조 (생략)	제 11 조 (현행과 동일)	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